



○ 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- 안 제1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목적을 규정하고
- 안 제2조에 군수가 안전관리계획, 안전점검 등 필요에 의하여 요청하는 자문내용을 규정하고
- 안 제3조에 자문단의 구성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10 ~ 20인 이내의 자문단 정수와 전문가의 전문분야를 규정하고
- 안 제4조에 자문단의 임기
- 안 제5조에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
- 안 제6조에 자문단 회의의 소집과 의결정족수, 관계공무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회의 운영방안을 규정하고
- 안 제7조와 제8조, 제9조, 제10조에 자문과 안전점검 의견청취, 상담 실시 결과보고를 하고
- 안 제11조에서 자문단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고
- 안 제12조에서 자문단 사무처리 지원을 위한 간사와 서기를 지정하고
- 안 제13조에서 자문단회의와 참석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
- 안 제14조에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- 이 조례안의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위임규정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이 조례를 제정시행 하는 것이 타당함을 검토보고 합니다.

5. 질의 및 답변 :

- 문 : 제32조의 민간전문가 어떤 사람인가 ?
- 답 : 민간인으로서 재난과 관련된 전문가입니다.
- 문 : 몇 명을 위촉할 것인가 ?
- 답 : 이 조례 시행후 위촉인원 및 대상을 결정할 것 입니다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